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보수 규정

##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 보수 규정

제정 2021.06.23.

개정 2024.11.13.

#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의 임원의 보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"임원"이란 체육회 정관 제23조에 따른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를 말한다.

#### 제 2 장 임원의 보수

제4조(보수 지급대상 및 지급액) 임원의 보수는 상임 임원에 한해서 [별표1]에 따라 지급하다.

**제5조(보수지급일)** 보수는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6조(보수계산) 보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다.

- 1.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.
- 2. 보수의 일할계산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눈다.
- 제7조(퇴직금) ① 임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 금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.
  - ②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7조의2(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)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-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다.
- 1. 재직 중의 사유(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)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-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 [본조 신설 2024.11.13.]

#### 제3장 임원의 실비보상

- 제8조(실비보상) ① 임원이 직무로 인하여 관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  - ②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#### 부 칙 (2021.06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2024.11.1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임원의 보수표

(단위 : 원)

직 위	보 수	비고	
임 원	기준급*의 70% 이내	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	

<sup>\*</sup> 기준급이란, 해당연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2(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연봉 표)의 '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의 경우' 연봉을 말한다.

